

노인학대예방 공익브랜드

나비새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110, 129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노인복지 생
활시설 종사자
대상교육교재



발행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행인 이기민

편집인 이현민, 이혜영, 김재인

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국회대로76가길14, 4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9년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본 교육교재는



사회적기업 청밀 과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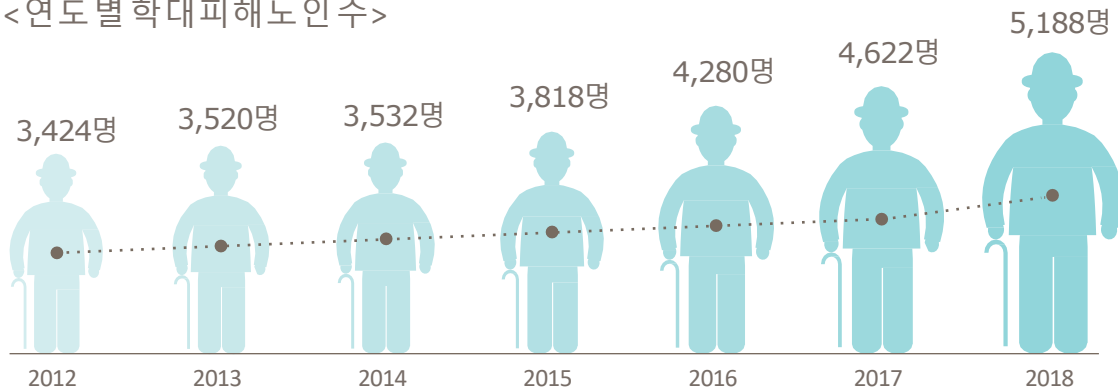
01 노인학대 현황



Q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연도 별 학대 피해 노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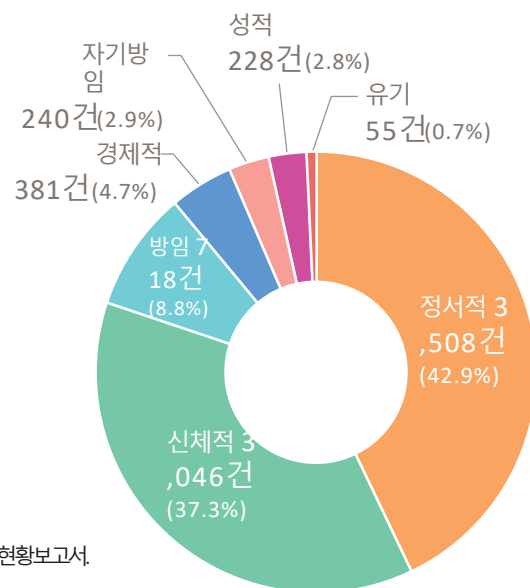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어
- 짜다한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8 노인학대현황보고서



02 나는 신고 의무자



Q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 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 피해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의 행동 교정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의 심 사례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분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 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3 노인학대 알아 보기

노인학대의 특성

- ①지속성: 오랜기간동안학대행위가계속됨
- ②복합성: 가족및관계내복합적이고상호적인원인이존재함
- ③반복성: 일회성으로그치지않고반복하여발생함
- ④은폐성: 묵인되고은폐되며,남에게알리고싶어하지않음“그래도 내자식”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또는도구를 이용하여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
신적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신체 구타·억압·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강제로 가
둠,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장치·약
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투입, 강제노동
등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언어및비언어적행위를 통
하여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 노
인의의사에반하여강제적으로행하는모든성적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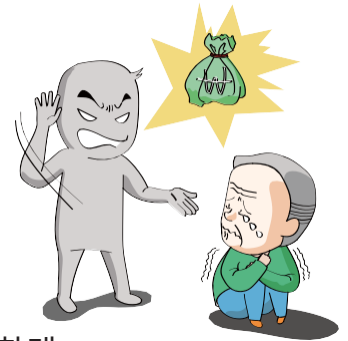
예)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
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등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책임이나의무를거부, 불이행혹은포기하여노
인의의식주및 의료를적절하게제공하지않는행위(※ 노인
스스로가최소한의자기보호관련행위를포기하여심신이
위험한상황,사망에이르게하는자기방임포함)

예) 노인이 계절에맞지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
러 야웜 등(자기방임: 스스로 식사거부, 비위생적인 집안환
경 등)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
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위반, 경제적 권리와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
을하는 행위

예) 노인의 통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함 등



유기

보호자또는부양의무자가노인을버리는 행위

예) 노인의 시설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장소에버
림 등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바람직한 대처방안

신체적 학대

물리적힘또는도구를이용하여
노인에게신체적혹은
정신적손상,고통, 장애
를유발시키는행위



A요양보호사는 중증치매를 앓는 B노인이 비위관(콧줄)을 자꾸 빼서 걱정이 가득하다. 치매와 고령으로 인해 식사만으로는 영양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통해 영양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계속 비위관을 빼는 바람에 사전동의 없이 양손에 억제대를 사용했다. 비위관을 다시 삽입할 때마다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이 경우 생명유지의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위자료』

『어르신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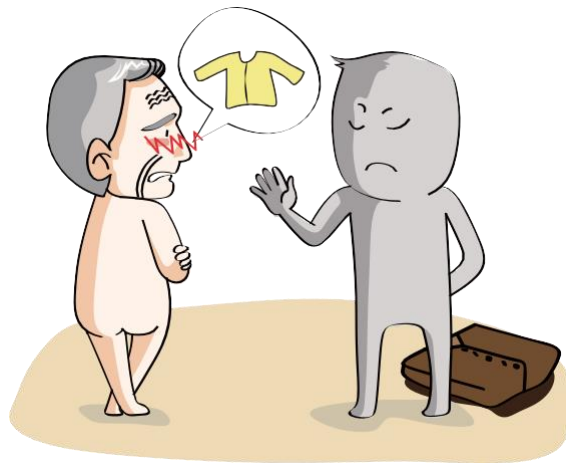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내다보니 A노인과 B요양보호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A노인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요양보호사가 반말 섞인 말투와 큰 소리로 말하다 보니 흡사 싸우는 것처럼 보여 행여 보호자들이 보고 오해할까 걱정된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소리의 높낮이와 강도에 대한 감지능력을 변화시켜 고음이나 큰 소리를 듣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되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크게 소리를 지르듯 이야기하는 것 보다 저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반말을 하거나 이름만 부르는 등 노인을 어린아이 대하듯 해서 는 안 되며, 직원 교육을 통해 노인과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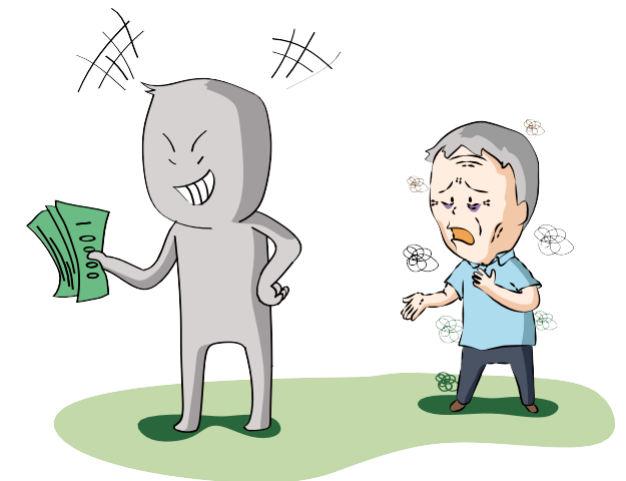
시설 입소자 목욕문제로 보호자의 전화를 받은 K사무국장은 직원 배치표를 골뎠히 보고 있다. 보호자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아버지께 목욕서비스를 하는 것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설 내 요양보호사 중 남자직원이 너무 적어 모든 남자 어르신의 목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인복지시설은 성적수치심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가능한 노인과 동성인 요양보호사를 목욕서비스에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채용 등과 같은 방안으로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입소계약서에 의거하여 동의한 사항을 노인 및 보호자에게 인지시키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 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요즘 C노인의 얼굴이 부쩍 어두워 보인다. 아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관리를 하는데 면회도 오지 않고 어쩌다 찾아오더라도 용돈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노인들은 자유롭게 물품도 구매하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C노인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인의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르신이 보호자에게 권리를 위임했어도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르신 개인 소유 통장 등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노인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어 노인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위임받아 관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에서 입출금 내역 및 사용 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두어야 하며, 분기별 또는 요청 시에 수시로 재정 사용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어르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보실래요?”.....”

얼마전부터 말을 걸어보아도 대답도 안하시고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계신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프로그램도 모두 싫다고 하시며 식사, 약 복용도 거부하시는 M노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도 일손이 부족할 때는 M노인에게 유동식을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에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먼저 보호자에게 노인의 상태를 알리고, 우울증상을 보이는 노인에 대해서는 그 증세 등을 기록으로 남겨 추이를 살피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편의를 위해 일반식 섭취가 가능한 노인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유동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혼자서 시간을 가지게 할 시에도 틈틈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A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지 벌써 3달이 다 되어간다.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보호자로서 부양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에 보호자에게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면회, 전화 통화 등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유대 관계를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어르신의 전원 및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05 노인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더라도 지니 칠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 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 신고자 관련 정보

- . 신고자 인적 사항 : 이름, 현거주지, 연락처 등
- .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
- .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 신고자의 욕구 : 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 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 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학대 피해 노인 관련 정보

- . 학대 피해 노인의 현재 상황 : 안전 여부, 긴급 분리 보호 여부, 노인의 심신 상태 등
- . 학대 피해 노인 인적 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거주지, 연락처, 가족 관계 등
- . 학대 내용

○ 학대 행위자 관련 정보

- . 학대 행위자 인적 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 학대 관련 정보

- . 학대 발생 여부 : 학대 유형, 학대 정도 및 심각성, 학대 발생 일시, 학대 발생 장소, 학대 발생 빈도, 학대 지속 기간 등

○ 시설 관련 정보*

- . 학대 내용 : 시설 관리 · 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 내 이용자들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 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시설 관련 정보도 파악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는 이관서를 작성하는 경우,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관서 작성의 예

<이관 시 필수 전달내

용> ① 접수 일시: 1월 27일 1

5시 ② 상담원 이름: 김수진 ③

신고자 이름: 홍길동

④ 신고자 전화번호: 010-1234-5678

⑤ 학대 피해 노인 이름: 홍철수 ⑥ 학대 피해

노인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 ⑦ 학대 행위

자 이름: 이영희

⑧ 접수 내용: 신고자는 학대 피해 노인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신고함. 학대 피해 노인은 치매로 인해 새벽에 홀로 집을 나가 길가에 있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학대 행위자는 그러한 학대 피해 노인을 보며 무 능하다, 나가 죽어라 등의 욕설을 하고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 하여 때리기도 함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 법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조치는 취약 노인으로서의 보호 조치와 범죄 피해자로서의 보호 조치의 의미를 갖습니다.

○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조치 근거 법

.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로 인한 형사 절차 진행 관련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으로 인한 학대 피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 피해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기타 취약 노인으로서의 학대 피해 노인 지원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구조법

06 노인보호전문 기관 서비스 안내

사례

A노인의 보호자는 시설에 계신 어머니를 면회하던 중 어머니의 얼굴과 양팔, 손목에 알 수 없는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며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지역 **공무원과** 함께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B요양보호사가 A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손으로 A노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팔과 손목을 발로 밟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요양보호사 또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시설 장도 학대 발생사실을 인정하며 학대행위자인 B요양보호사를 퇴사처리할 것임을 알렸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례를 **노인학대로 판정**하였으며, **재학대 발생 위험**이 없도록 학대행위자(B요양보호사)의 퇴사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당 시설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관할 시청에 송부** 하였다.

관할 시는 본 사례를 장기요양기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하였다. 노인보호전문 기관은 행정조치 결과와 함께 **타 시설로 전원조치**된 A노인이 새로운 시설에서 건강히 잘 **적응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사례를 종결하였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입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8개의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 최장 6개월 간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는 학대피해노인 쉼터생활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의 설치))

02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 입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학대피해노인보호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 기관을 통해 입소의뢰된 학대피해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입소 여부 판정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로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시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를 통해 전문 심리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 신체·정신적문제 등 치료연계

학대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중독 및 신체, 정신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치료, 방문간호, 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03

학대행위자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개입시, 학대피해노인상담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제거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또한 노인 학대행위로 상담 및 교육, 심리치료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학대행위자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04

법률서비스지원·연계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법률상담연결, 소송지원, 고소고발) 및 가정법률 상담소와 연계한 이혼절차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내 학대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서비스지원 및 관내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05

이혼절차 정보제공(가정법률상담소)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하여 법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06

07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¹⁾



Q 신고 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의 역할

노인 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①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② 노인학대 사례의뢰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③ 신고한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행동강령

-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③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⑥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⑦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
- ⑧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⑨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⑩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⑪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⑫ 노인의 이성 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지서는 안 된다.
- ⑬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⑭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2019).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일부 발췌.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 p 220.

○ 노인 복지 생활 시설의 역할

시설 내 노인 학대의 심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 ① 학대 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 피해 노인의 신변 보장과 안전 조치를 취하고, 현장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 피해 노인의 비밀 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 하되, 학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시설장은 현장 조사의 완료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 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 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학대 피해 노인의 후속 보호 조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노인 복지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 운영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 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보건복지부(2019). 시설 생활 노인 학대 예방 및 개입 지침 일부 발췌. 노인 보건 복지 사업 안내(1) p25.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 법적 근거
 - 노인 복지법 제39조의6(노인 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1. 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 시설
- 2.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 병원 및 종합 병원
- 3.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
- 교육 방법
 - 교육 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 결과 제출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노인 복지 시설 장기요양 기관 → 시·군·구(각 시설 담당 부서) → 시도(노인 보호 사업 담당 부서) → 보건 복지부(노인 정책과)

인권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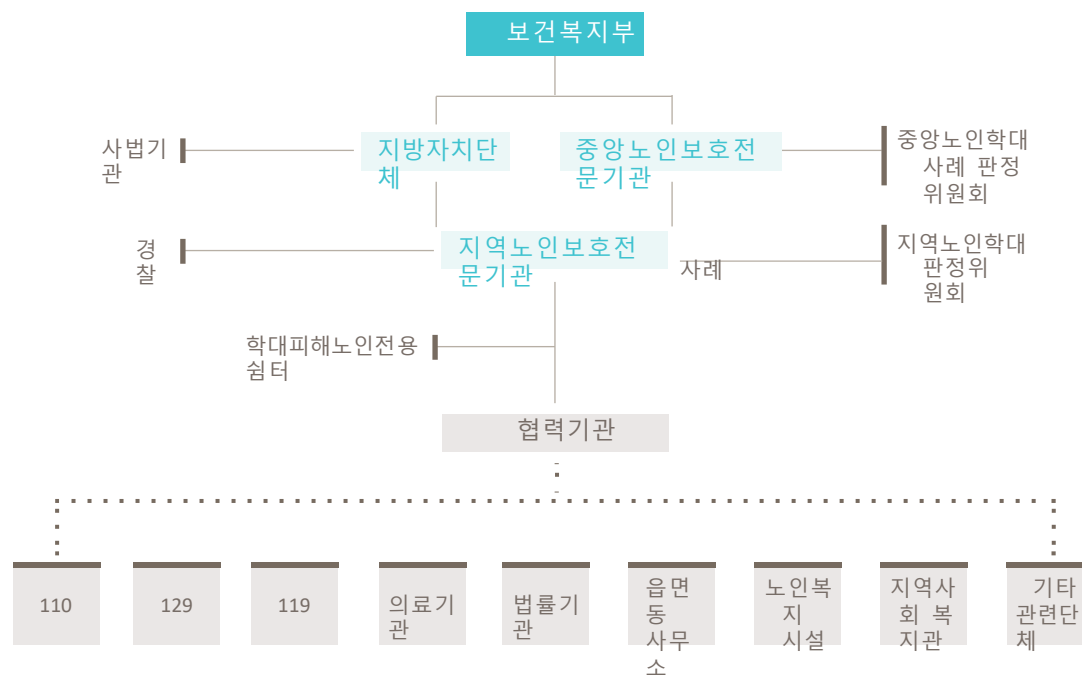
- 법적 근거
 - 노인 복지법 제6조의3(인권 교육)
 - ① 제31조의 노인 복지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35조의3(인권 교육)
 - ① 장기요양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1. 노인 복지 시설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 및 노인 교실은 제외)
- 2. 재가 장기요양 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 방법
 -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 교육 기관(국가 인권 위원회 노인 보호 전문 기관 한국 보건 복지 인력 개발 원)을 통해 집합 교육(연 4시간 이상) 또는 인터넷 교육(연 6시간 이상) 이수
- 교육 결과 제출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노인 복지 시설 장기요양 기관 → 시·군·구(노인 복지 담당 부서) → 시도(노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 복지부(노인 정책과, 요양 보험 운영과)

08 노인보호전문 기관 소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및노인권익향상을위한업무를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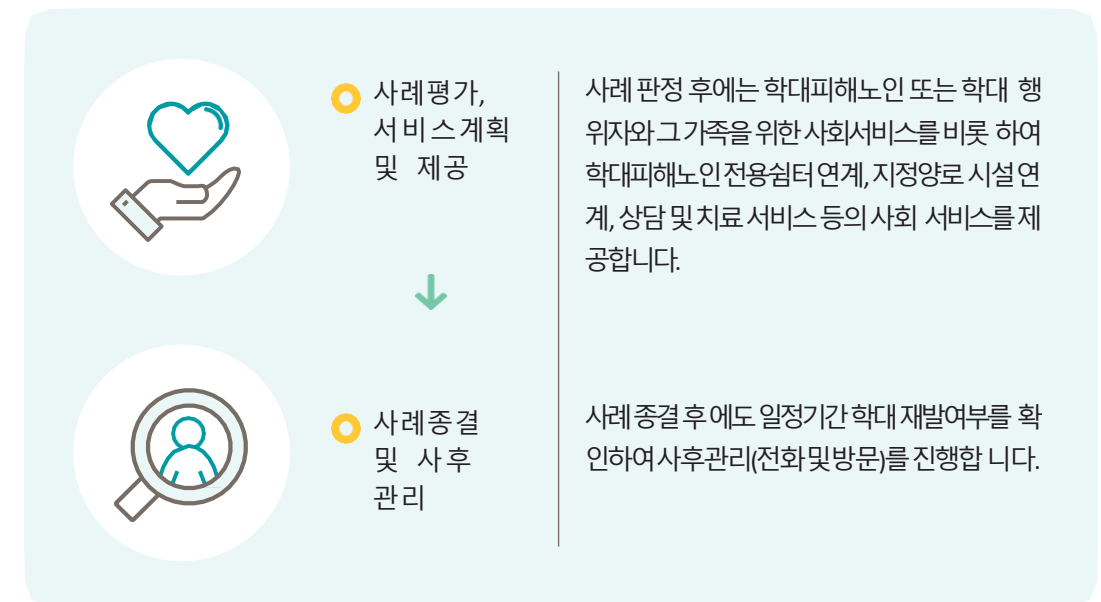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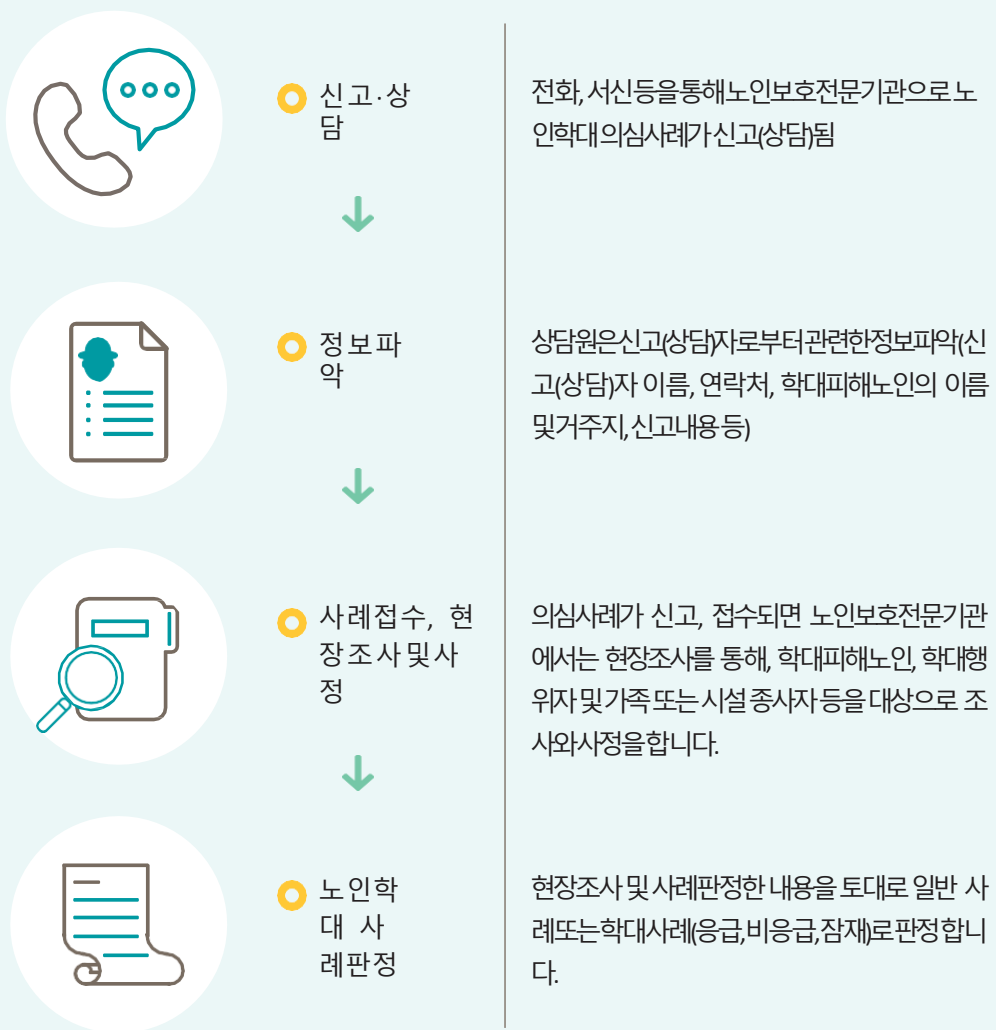
노인학대예방사업체 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연대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1577-1389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및 전화번호는 27쪽 참고)

09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소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19에 근거하여보호및행위자와의분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만65세 이상학대피해노인을대상으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입소기간

4개월이내(학대재발의우려등 재입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포함하여 연간 총 6개월 이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퇴소후원가정복귀 어려운학대피해노인은**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입소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지정양로시설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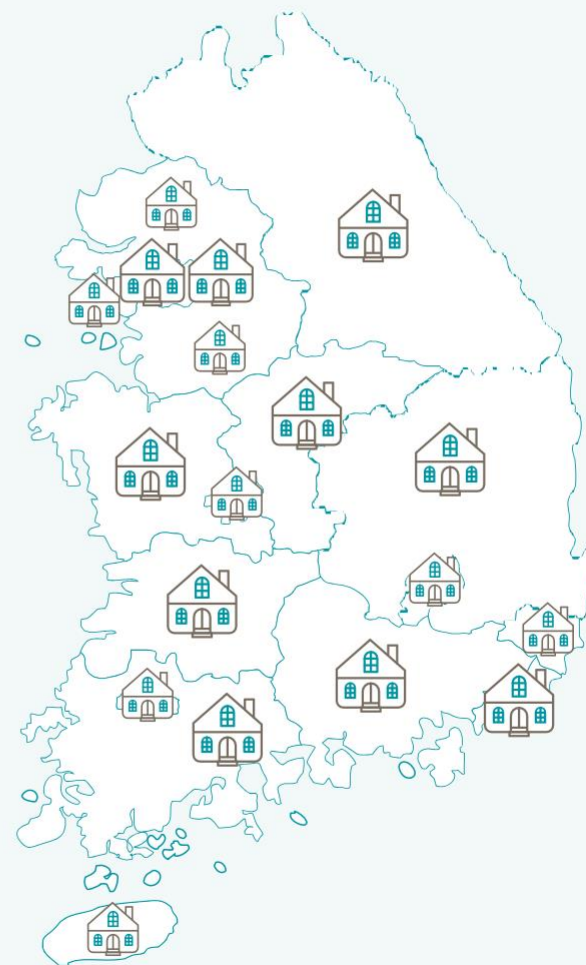
서비스 내용

- 1 학대피해노인의보호와숙식제공등의쉼터생활지원
- 2 학대피해노인의심리적안정을위한전문심리상담등치유프로그램제공
- 3 학대피해노인에게학대로인한신체적, 정신적치료를위한기본적인의료비지원
- 4 학대재발방지와원가정회복을위하여노인학대행위자등에게전문상담서비스제공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광역시·도에 18개 설치되어있습니다. 쉼터에서는보호가필요한만65세 이상학대피해노인을일정기간보호하고심신치유프로그램진행및학대행위자와그가족들에대한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재학대발생예방및원가정회복을지원하고있습니다.





노인학대 처벌 기준



전국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2019. 10. 기준)

법률	내용	처벌
벌칙 제55조의2	노인의신체에상해를입히는경우	7년 이하의징역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
벌칙 제55조의3	노인의신체에폭행을가하는행위	5년 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주는성폭력·성희롱 등의행위	
	자신의보호·감독을받는노인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하게하거나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행위	
	폭언, 협박, 위협등으로노인의정신건강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신설)	
벌칙 제55조의4	노인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3년 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
	위계또는위력을행사하여노인학대금지행위관련관계공무원의출입또는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자	
벌칙 제57조	신고인의신분보호및신원노출금지의무를위반한자	1년 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학대노인의보호와관련된업무에종사자가 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	
과태료 제61조의2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서노인학대를신고하지아니한자	500만 원의 이하의과태료

* 노인학대법적처벌기준: 노인복지법외타법률적용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형도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대해형도는치료감호의집행종료 또는집행면제 후10년까지의기간동안의료기관을운영하거나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도록함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중앙		-	02)3667-1389
서울	서울남부	강남구,강동구,관악구,금천구,동작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용산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종로구,광진구	02)921-1389
	서울서부	종로구,중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	02)3157-6389
부산	부산동부	중구,서구,동구,북구,사상구,사하구,영도구,남구,강서구	051)468-8850
	부산서부*	연제구,수영구,해운대구,동래구,금정구,부산진구,기장군	051)867-9119
대구	대구남부*	남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053)472-1389
	대구북부	중구,동구,서구,북구	053)357-1389
인천	인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옹진군	032)426-8792
	인천서부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032)569-0533
광주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062)655-4155
대전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042)472-1389
울산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052)265-1389
경기	경기남부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용인시(처인구,기흥구,수지구),이천시,광주시,하남시,의왕시,과천시,여주군,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031)821-1461
	경기서부*	안양시(만안구,동안구),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시흥시,광명시,군포시,김포시	032)683-138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안산시(상록구,단원구),화성시,평택시,안성시,오산시	031)268-1389
강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033)253-1389
	강원동부	속초시,강릉시,동해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	033)655-1389
	강원남부	원주시,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033)744-1389
충북	충북*	청주시,청원군,증평군,진천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043)259-8120
	충북북부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043)846-1380
충남	충남*	천안시(동남구,서북구),아산시,서산시,연기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041)534-1389
	충남남부	보령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공주시	041)734-1389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덕진구),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063)273-1389
	전북서부	군산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고창군,부안군	063)443-1389
전남	전남동부*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장성군,장흥군,화순군	061)742-3071
	전남서부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영광군,함평군,해남군,진도군,완도군,신안군,나주시	061)281-2391
경북	경북*	포항시,경주시,영천시,영덕군,청송군,청도군,울진군,울릉군	054)248-1389
	경북서부*	영주시,문경시,안동시,상주시,예천군,영양군,의성군,봉화군	054)655-1389
경남	경북서남부	구미시,김천시,경산시,성주군,고령군,칠곡군,군위군	054)436-1390
	경남*	통영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합안군,창녕군,고성군,창원시(진해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성산구,의창구)	055)222-1389
제주	경남서부	진주시,사천시,의령군,남해군,하동군,함양군,산청군,거창군,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시	064)757-3400
	서귀포시	서귀포시	064)763-1999